

「2004년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」

《 檢 討 報 告 書 》

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사유는

- 당초 계획인 충남 보령시 청라면 소재 장현초등학교의 폐교부지 매입은 2005. 8. 19 보령교육청에서 예정가격 4억 1천만원으로 공개경쟁입찰을 공고한 상태에 있어 매입이 불확실하며,
- 간선도로에서 장현초등학교까지의 약 150m 길이의 진입로의 확장이 필요하나 진입로 확장시 보상문제가 대두됨으로 여타지역의 폐교를 물색하던 중
- 감정평가에 의한 수의계약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우리구 자매결연지인 고성군청과 고성군교육청의 의견제시가 있어
- 경남 고성군 구만면 소재 회화중학교 구만분교의 폐교 및 동 부지를 매입코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.

## 【 관련 법규 】

### □ 청소년 기본법

#### ○ 제18조 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#### ○ 제57조(국·공유재산의 대부 등)

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시설의 설치,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지방재정법」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에게 국·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### 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

#### ○ 제5조(대부등에 관한 특례)

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, 사회복지시설 또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대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.

### 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 조례

#### ○ 제36조(공유재산관리계획)

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며 매년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.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